

# 복제 배아 연구를 불법화해야 하는 이유

윤성혜 가타리나  
문화일보 차장



## ‘비윤리적’이란 태생적 한계로 도태 위기 세계,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로 급선회

생물학의 ‘성배(聖杯)’로 불리며 금세기 의학혁명을 예고했던 복제배아줄기세포. 그러나 그 연구는 ‘비윤리적’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부딪쳐 기술적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의학사의 뒷안길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과학기술자들조차도 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에 속속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체세포핵이식배아복제기술의 경우 영국이 특허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구로 인한 대규모 인간 난자 및 배아 파괴, 그로 인한 여성착취, 인명경시 등과 같은 격한 윤리논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윤리문제에서 자유롭고 효율적인 줄기세포연구 쪽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국제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난치병 치료라는 명분 아래 정부와 생명공학자, 관련 업계가 의기투합해 체세포핵이식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가공할만한 법을 최근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라 일컫는 이 법은 국내에서 거의 무제한으로 여성의 난자를 거둬들이고 배아를 생산, 파괴하고 상업화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를 시종일관 반대해 온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유례없이 비도덕적인 생명 이슈에 직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생명보호' 국제 사회 흐름에 역주행 국가가 여성의 도구화, 난자 거래·생명 파괴 조장

지난 5월 국회에서 체세포핵이식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날치기로 통과함에 따라 그간 종교계 일각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반론들이 하루아침에 백지화됐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12일 구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 '생명윤리 기본법' (가칭)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본법은 체세포핵이식배아줄기세포 연구와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하거나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시행 후 2~3년 이내에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체세포핵이식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의학적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됐습니다. 이 법 역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체세포핵이식복제배아 연구의 종류, 대상 및 범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2월 황우석씨 논문조작 사건 이후 체세포핵이식복제배아 연구의 '제한적 허용'과 '한시적 금지'를 놓고 위원회 내 양측 의견들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청회와 언론 등을 통해 불임시술 후 폐기될 잉여 난자만을 사용케 하고 연구 목적의 난자 기증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회부된 '일부 개정안'은 지난 5월, 2개의 다른 의원 법률안과 통합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각 10회에 걸쳐 열린 생명윤리자문위원회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기해 온 난자 및 배아 파괴와 관련한 반대 의견 혹은 소수 의견의 반영을 끝내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즉 체세포핵이식배아복제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국민 반대여론을 무조건 '원천 봉쇄'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일종의 '연막전술'을 구사해 왔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의 하나로, 정부는 지난 2007년 11월 개정 법률안을 정부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그 해 5월 이화여대에서 '전면 개정안'이라는 명칭으로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법은 내용상 거의 변화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히려 체세포핵이식배아복제 연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했다는 게 가톨릭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의 분석입니다. 개정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하는 순간에도,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단순한 의원입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부의 '전면 개정안'이 지난 회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폐기된 상태였으므로 향후 새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 국민 컨센서스 없는 법 통과는 혼란만 야기 복제배아 연구의 비윤리성 과학으로 입증돼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가 윤리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산업측면에서 더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sup>1)</sup>이 극명하게 노정됐습니다. 또 찬·반론자들 간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른바 ‘이성적 불일치’를 상호 인정하고 양측이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 내려면 무엇보다도 입법 주체 자신이 이해 관계와 철저히 무관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재삼 증명됐습니다.

이 법은 당초 목적부터가 ‘생명윤리’와 ‘생명이용’이라는 형용모순의 대명제를 내포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목적과 가치, 그리고 수단과 결과가 서로 엇갈리면서 차갑게 대립했습니다. 그 결과 생명공학의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전체 사회적 통합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물론 배아연구 찬성론자들은 과학 연구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 받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자유만으로도 생명공학이 산업화될 경우 인간사회 전체 또는 국민경제에 매우 유용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sup>2)</sup>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연구를 위해 살아있는 배아의 이용을 허용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sup>3)</sup> “공리적 유용성의 판단이 경험적, 실증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이론적이며, 가치론적 성격을 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체세포복제와 연구의 일반적 허용이 인간과 인류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판단은 경험적으로 이미 근거지어진 판단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적 가설일 뿐”<sup>4)</sup>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연구진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체세포핵이식복제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논문은 조작된 것이었던 만큼 이에 관한 기술은 더욱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작논문은 뒤집어서 보면, 예비실험을 제외하고 2005년 논문에 사용된 인간배아 수만 해도 185개, 난자는 2,000여 개에 달했지만 배양 접시 안에서 복제배아줄기세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긴 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치료 차원의 복제는 하나의 속임수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험에 이용되는 배아들은 몇몇의 미래의 특정한 인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어쩌면 돕게 될지도 모를 그런 불확실한 과학 연구를 위해 희생된다는 것입니다.”<sup>5)</sup>

복제배아줄기세포의 불안전성도 속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복제배아줄기세포가 인체 내에서는 암세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실험 결과 배아줄기세포에서 유도된 세포는 체내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형 종양이나 기형 암종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아줄기세포 복제 기술을 인간의 난치병 치료에 쓰겠다고 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헛된 환상만 심어주고 그들을 현혹하는 잘못된 행위며 대규모 연구비를 노린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게 연구 반대론자들의 핵심 논거입니다.

더욱이 복제배아 연구는 복잡한 국제 특허권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 행사 권한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국내에서도 영국의 월머트에게 로열티를 지불한 H 씨와 자체적으로 국산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L 씨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의 과학자들이 영국의 복제배아 기술을 처음부터 포

1) 이동익, 「생명, 인간의 도구인가」(2006) 바오로딸, 29쪽. 2) 이상돈, 「생명공학과 법」(2003) 아카넷, 6, 35쪽. 3) 피터 싱어, 헬가커스, 「생명윤리학 II」(2006), 도서출판 인간사랑, 349쪽. 4) 같은책, 36쪽. 5)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2006), 철학과 현실사, 181쪽. 6) 가톨릭생명연구소, 「의학윤리지침서」(2008), 가톨릭중앙의료원, 180쪽.

## 특집

기하고 새 방법을 모색하는 이유 중 하나도 결국 이처럼 “남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 없이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틈새 분야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sup>7)</sup>

기본적으로 개정법은 생명의 윤리와 안전을 다루는 법률임에도,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규정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sup>8)</sup> “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발생학적 지식에 기초한 가치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sup>9)</sup>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의학, 정밀 관찰 기기, 검사 기법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의, 과학자들 사이에 불문율로 인정받던 예의 ‘14일론’ 혹은 ‘14일 가설’ 이 이제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흔들리는 가설이 되고 있습니다. 수정 후 14일 이후를 생명의 시초로 보는 견해는 과거 전자현미경이 지금처럼 많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나온 주장입니다. 결국 “2002년 7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과학학술지 ‘네이처’가 인간 신체의 구조나 조직은 늦어도 수정된 후 몇 분 안에 형성된다고 발표하면서 ‘수정 후 즉시’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는 견해를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네이처’의 이러한 발표 후 실제로 ‘원시선’ 형성 이후부터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sup>10)</sup>

개정법은 찬성론자들에 의해 새로 제기된 개체성 논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14일 이전 세포들은 쌍둥이로 분화할 가능성이 있어 개체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인간이 아니다”<sup>11)</sup>라는 주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태의 결과가 비록 하나의 인간인지 아닌지 확정지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감히 살인을 감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중죄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잡목 속에 움직이는 것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사냥꾼이 총을 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sup>12)</sup>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아가 인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배아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만큼 인간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 것”<sup>13)</sup>입니다.

개정법은 벌써부터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에서 당초 시작된 폐기 상태의 냉동배아 이용의 허용은 “기왕 알코올로 태워 없애버려야 한다면 줄기세포 배양에 이용하자”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폐기될 운명의 냉동수정란 배아뿐만 아니라, 공여된 난자, 정자를 이용해 임신 목적으로 창출한 잔여생배아, 체세포핵이식복제배아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배아의 생산, 소비, 파괴를 허용,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 대상의 냉동배아에서 수립된 68개의 기존 줄기세포주를 사용한 연구에 한해서만 연방정부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배아 사용 허용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일각에서는 “난자가 배아가 될 수 있는 잠재성 논변을 확대한다면 인체의 모든 세포 역시 잠재적 인간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역설이 발생한다.”<sup>14)</sup>고 언급합니다. 즉 정자와 난자도 잠재적인 인간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펠니다. 하지만 난자나 배아가 설령 인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물체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배아는 인간의 몸의 일부 혹은 그로부터 획득된 시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살아있는 몸 전체는 물론, 일부 조직이라도 사려 깊게 취급돼야 하며 그것이 생식세포라면 더욱 그러합니다.”<sup>15)</sup> 이는 마치 인간 시체를 나무토막처럼 이미 죽어 쓸모가 없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다른 물체와 똑같이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7) 윤성혜, “줄기세포연구가 가야할 길,” *한국과학재단소식지*, 2002, 2월호 참조. 8) 박은정 외,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와 법정책』(2004), 이화여대출판부, 56쪽. 9) 같은 책, 57쪽. 10) 이동익, 「생명, 인간의 도구인가?」(2006), 바오로딸, 22쪽. 11) 베른하르트 헤링, 이동익 옮김, 『의료윤리』(2006) 가톨릭출판사, 129쪽. 12)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2005), 아카넷, 119쪽. 13) 같은 책, 144~145쪽. 14) 박은정 외,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와 법정책』(2004), 이화여대출판부, 19쪽. 15) 같은 책, 14쪽.

특히 배아는 수정 순간부터 손가락의 지문 등에서 증명되듯이 유전적으로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생명과도 구별되는 것으로, 유일하고도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유전인자를 갖고”<sup>16)</sup> 있습니다. 따라서 난자나 배아 파괴는 인간이란 정체성, 모든 인간이 속해있는 인류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자, 도전이요, 침해입니다. 이런 배아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론자들은 배아복제 기술은 나아가 어린이에 대한 위험한 시각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인간복제는 체세포복제배아 조직의 거부반응을 피하기 위해 당연히 다음 단계에 오게 될 논리적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식물과 작은 동물에서 기술이 확보하면 그 다음에는 보다 큰 포유류 차례입니다. 인간복제에는 지극히 적은 기술적 응용만 필요합니다.”<sup>17)</sup>

개정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세포핵이식복제배아 창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난자를 합법적으로 대량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난자 제공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교통비 등 실비 보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가난한 여성들은 타의반 자의반 난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병원에서 값비싼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고 실비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의 몸은 심하게 착취당하고 난자의 생산 공장으로서 대상화할 수 있습니다.”<sup>18)</sup> 여성의 “난자 제공은 (비록 좋은 의도에서였다 하더라도) 배아가 폐기되거나 연구용으로 희생되게 하는 원인제공을 하는 것입니다.”<sup>19)</sup> 새 개정법이 본격 실행될 경우 인간을, 특히 여성을 의술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난자 거래와 난자, 배아의 대량 파괴를 촉진함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는 이러한 법조항에 근거합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퇴폐적, 비윤리적 연쇄 행위를 법으로 정당화하는 곳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철학자 흄에 따르면 도덕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넘어서는 안 될 장벽이 존재하는데 이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추잡스러운 문명의 타락과 관련된다는 느낌입니다. 이 도덕적 감수성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직관적인 것입니다. 이는 다원적 윤리관이 존재하는 사회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의지하게 되는 잣대입니다.”<sup>20)</sup>

개정법은 과학자들이 생명조작을 인위적으로 가속화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자연계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인체부위의 상업화와 고객화를 부추긴 나머지 사람들에게 약과 치료법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치료술의 독점화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의료접근 및 혜택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될 것이란 극단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그 밖에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아직 일반대중이 주시하지 않은 보다 더 심각한 윤리적 쟁점, 즉 상대적 불사(不死)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줄기세포와 복제공학의 발달 덕분에 인간 수명이 가령 수 백 년으로 연장될 경우의 문제점입니다. 누구나 80년만 살다가 죽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80년 살고 누구는 수 백 년을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sup>21)</sup> 세계 각국에서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 등으로 수 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천문학적인 숫자의 연구비를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부조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16) 베른하르트 헤링, 이동익 옮김, 『의료윤리』(2006), 가톨릭출판사, 126쪽. 17) 윤성혜, “줄기세포연구가 가야할 길” 한국과학재단소식지, 2002, 2월호 참조. 18) 같은 책, 20쪽. 19)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2005), 아카넷, 146쪽. 20) 박은정 외,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와 법적책』(2004), 이화여대출판부, 15쪽. 21) 윤성혜, “줄기세포의 미래,” 한국과학재단소식지, 2002, 1월호, 조사분석기고 참조.